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6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건축6,지적3,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6	276	9	30	51
행정		213	154	6	9	44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5	256	2	28	59
행정		190	136	2	5	47
세무		32	32			
사회복지		15	6			9
전산		7	6			1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5	5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2015년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 나.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무인력 확충을 위한 세무직 정원 확보
- 다. 직급·직렬별 정원표 상의 규정 외 표기사항 개선

2. 주요내용

- 가.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을 위한 직렬 간 정원조정
 - 1) 전직대상 관리운영직군 정원 감소정하고 전직예정 직렬(일반직) 정원 증원
 - [감축]사무운영 10, 기계운영 2, 전기운영 3
 - [증원]행정 9, 전산 1, 기계 2, 전기 3
- 나. 소득세제 개편 관련 세무인력 확충을 위한 세무직렬 정원 증원
 - 1) 세무직 신규임용(3명)을 위해 정원 3명 추가 확보
 - 2) 기능 감소 직렬 통한 퇴직정원 정비를 통한 정원 증원
 - [감축]방호(경비) 9급 3명 → [증원]세무 9급 3명
- 다. 정원표 상 규정 외 표기사항 개선 : “임기제” 표기 삭제
 - 1) 직급·직렬별 정원표 상 직렬로 혼동되어 사용 중인 “임기제” 표기 삭제
 - 2)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직렬로 정원 표기사항 조정